

의 정 정 보

2005 - 18 10. 6

목 차

I. 중앙기관 정보	1
II. 타 시·도 의회 동향	4
III. 새로 개정된 법령	6
부 록 : 행복한 책 읽기	9

충청남도의회사무처 법제자료담당관실 ☎ (042) 606-5021

I. 중앙기관 정보

① 행정자치부, 지방행정체제 개편연구 본격 착수

-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.
- 금년 초부터 정치권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난 7.27 제주도 주민투표에서도 단일자치체제로 개편하는 혁신적 대안이 선택된 이후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
- 행자부에서는 정치권의 공론화에 보조를 맞춰 그간 정치권·학계 등에서 제기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해 행자부내에 T/F를 구성·운영기로 하였으며, T/F에서는 최근 여야에서 제시한 개편방안에 대한 분석, 외국의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연구, 개편에 따른 비용·효과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.
- 행자부는 금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,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한 지방행정체제를 모색하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.

② 행정자치부,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

- 그 동안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할 수 있었던 공유토지를 공유자의 5분의 1이상만 동의하면 분할 신청이 가능하고,
 -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/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
 - 토지분할시 적용되던 『건축법』과 『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』에 규정된 대지의 최소면적, 건폐율, 용적율 등의 분할제한 규정과, 『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』의 아파트단지 분할제한 규정 등이 배제되며,
 - 지적공부정리수수료·공유토지분할등기수수료·공유물분할소송비용 등의 분할비용이 전액 면제되어 1인당 약 260여만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『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』이 시행되고 있다.
- 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·증축과 은행의 담보 제공이 불가능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토지로 누구나 공유토지분할을 원하고 있으나,
 - 그 동안 행정적 규제사항과 복잡한 분할절차 및 과도한 소요비용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분할을 못하고 있었다.
- 본 특례법의 시행은 이번이 3번째이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『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』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6년 12월말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.

③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

-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30대 전후가 대부분으로 그동안 직무수행 중 사망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(재직기간 20년 이상)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유족의 생계보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.
- 이에 행자부는 「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」(가칭)을 제정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신설·지급하는 등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- 그 제정취지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, 화재진압,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.
- ※ 군인의 경우, 공무상으로 사망하면 20년 미만 재직자의 유족에게도 「군인연금법」에 의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음.
- 주요내용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인 바,
 - 순직유족연금 급여액은 군인의 경우와 같이 사망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,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55%,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에는 65%를 지급하고,
 - 순직유족보상금 급여액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.
- 적용대상 공무원으로는 경찰·소방·교정공무원을 비롯한 위험직무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을 전부 대상으로 수사관, 대테러작전수행 공무원, 경호원, 산불진화 공무원, 사스 등 법정 전염병치료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.

II. 타 시·도 의회 동향

① 주민발의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조례안 광주시의회에 제출

- 광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조례 제정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.
- 광주지역 27개 장애인·시민·사회단체로 구성된 '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' 공동대표인 윤난실 광주시의원과 회원 등은 지난 9월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
 -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발의를 통해 중증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.
- 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주민 2만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(주민발의를 할 수 있는 법정 인원 1만8천명)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를 통해 중증장애인 지원조례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힘든 1~2급 중증 장애인을 위해 세면과 목욕, 외출 동행, 식사 준비, 업무 보조 등 '자립생활 지원'을 명문화하는 것이다.
- 특히 중증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'자립생활 센터'를 설치, 자립 생활 기술훈련과 주택 개조, 활동 보조, 정보 제공,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 운동 등 지원 사업을 돕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.
-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“우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도 더 이상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”며 “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② 제주도의회, 중앙부처에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건의

- 제주도의회는 ‘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건의문’을 채택하는 한편 관계기관을 방문 감귤유통명령제는 반드시 재도입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
-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, 감귤유통명령제는 반드시 재도입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배경과 취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.
- 이 건의문을 통해 “이제는 품질의 시대인만큼 감귤유통명령제의 재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전제하고 “비상품감귤의 유통은 감귤가격 폭락뿐만 아니라
 - 국내 과수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”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.
- 제주도의회는 이어 “올해 농업기술원에서 관측조사한 결과 수요에 알맞은 적정생산량 45만톤보다 약 8만톤 증가한 53만톤으로 예상되고 여름철 가뭄 등으로 인해 비상품 대과가 다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
 -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무척 커졌다”며 “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자,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을 건의한다”고 밝혔다.

Ⅲ. 새로 개정된 법령

①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시행 '05.10.1)

- 지정항만의 항만구역과 국가어항 구역안의 공유수면은 종전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되, 그 동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지방어항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이양
- 공유수면에서의 무분별한 건축물 신·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양 환경 및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공유수면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전검토를 강화
- 공유수면에서 건축물을 신축·증축 또는 개축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, 습지 보호지역과 생태·경관보호지역 등에 대한 점·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
-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사업시행자,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점·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점·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, 사업목적과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기업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

②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시행 '05.10.1)

- 공원구역의 규모 축소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축소 규모를 도립공원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, 군립공원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함
- 종전에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었으나,
 - 앞으로는 자연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
 -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
-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,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을 진입로, 공중화장실 등 교통·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
-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·증축·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장치,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③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시행 '05.10.1)

- 이미 면허·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
-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를 허용
- 투망에 대하여 유어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, 수산자원의 보호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일정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

④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(시행'05.10.1)

-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소재한 시·군의 석탄생산량·석탄생산량 감소율 및 인구감소율을 고려하여 당해 시·군 소재의 도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배분하도록 함
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·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·공유 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고,
 - 공장용도로 사용되는 국·공유재산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